

# 감 사 보 고 서

-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및  
한경국립대학교의 비위 관련  
(국회감사요구) -

2025. 4.

감 사 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 현황 .....	3
III. 감사결과 .....	6
1. 감사결과 총괄 .....	6
2.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8
3. 한경국립대학교의 비위 의혹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21
[별표] .....	33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회(교육위원회)는 2024. 11. 29.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와 한경국립대학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요구 내용

#### ▪ 주문

- ① A **개**의 교육부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개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참여에 대한 감사
- ②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 ③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처리 부적정,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개나** 표적감사 및 부당해고, 총장 노래방 접대 강요 등 비위에 대한 감사

#### ▪ 제안 이유

-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이 저작자가 될 수 없음에도 **개** A는 주식회사 **개개**의 역사교과서 저작자로 참여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합격 공고 전에 저작자 요건 위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서를 최종 검정 합격시켜,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실 검정과 특정 출판사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
- ②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교육부 소속 집필진, 표지 같이, 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편집자 등 주식회사 **개개**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 해당 문제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
- ③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리 부적정,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개나** 표적감사 및 교직원 부당 해고, 총장의 노래방 접대 동원 강요 등 한경국립대학교에 대해 제기된 일련의 비위행위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지켜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요구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발행자: 주식회사 **개개**) 검정과 관련하여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한경국립대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및 **개나**에 대한 감사 등에 있어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25. 2. 6.부터 같은 해 2. 21.까지 12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한경국립대학교와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4. 17.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 현황<sup>1)</sup>

### 1. 교과서 검정업무 현황

#### 가. 근거 및 관리체계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따르면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지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국정도서·검정도서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역사,<sup>2)</sup> 국어, 영어 등 교과용도서<sup>3)</sup>의 검정실시 공고, 검정 심사,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검정도서 저작자 또는 발행자의 규정 위반 등<sup>4)</sup> 사유 발생 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취소, 1년 범위 내 발행 정

-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2)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국정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평가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를 2010년에 처음으로 위탁받아 수행하였음. 그런데 2011. 1. 24.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되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을 2011~2013년 실시하였음. 이후 2016. 3. 22.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가 평가원에 다시 위탁되었고 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을 2019년부터 2025년 2월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음
- 3) 수학·과학·정보 및 경제 제외(교육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수학, 과학,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 관련 업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 관련 업무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함)
- 4)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 내용, 체제,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제2호),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제3호),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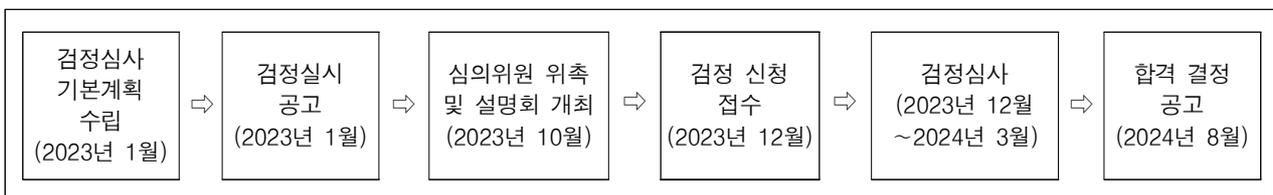
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 나.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과용도서 검정 추진 절차

교육부는 2022. 12. 22.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후 [그림 1]과 같이 2023. 1. 16. 검정 대상(한국사1·2 고등학교 교과서 포함 153책), 검정 시기,<sup>5)</sup> 검정 신청 자격(저작자 요건, 발행자 요건) 등을 포함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원은 같은 해 1. 27. 검정 대상, 검정 시기, 검정 신청 자격 등을 포함한 “교과용도서 검정실시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sup>6)</sup>

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2025년 3월 사용 예정) 검정심사를 위해 2023년 10월 심의위원(교원, 교과 전문가 등)을 위촉한 후 2023. 10. 26. 발행자(출판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정 신청 접수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고, 2023. 12. 11.부터 12. 14.까지 주식회사 [가] 등 발행자들로부터 검정 신청을 받았다. 평가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검정도서 심사본에 대한 심의위원의 심의(내용 오류 조사, 신청도서의 합격 결정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 8. 30. 주식회사 [가]가 발행한 역사교과서 등에 대한 최종 합격 결정을 공고하였다.

[그림 1] 2024년(2025년 3월 사용)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절차



자료: 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5) 검정 시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 연도로, 검정 시기가 2024년일 경우 학교 사용 시기는 2025년 3월부터임  
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해당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공고

## 2. 한경국립대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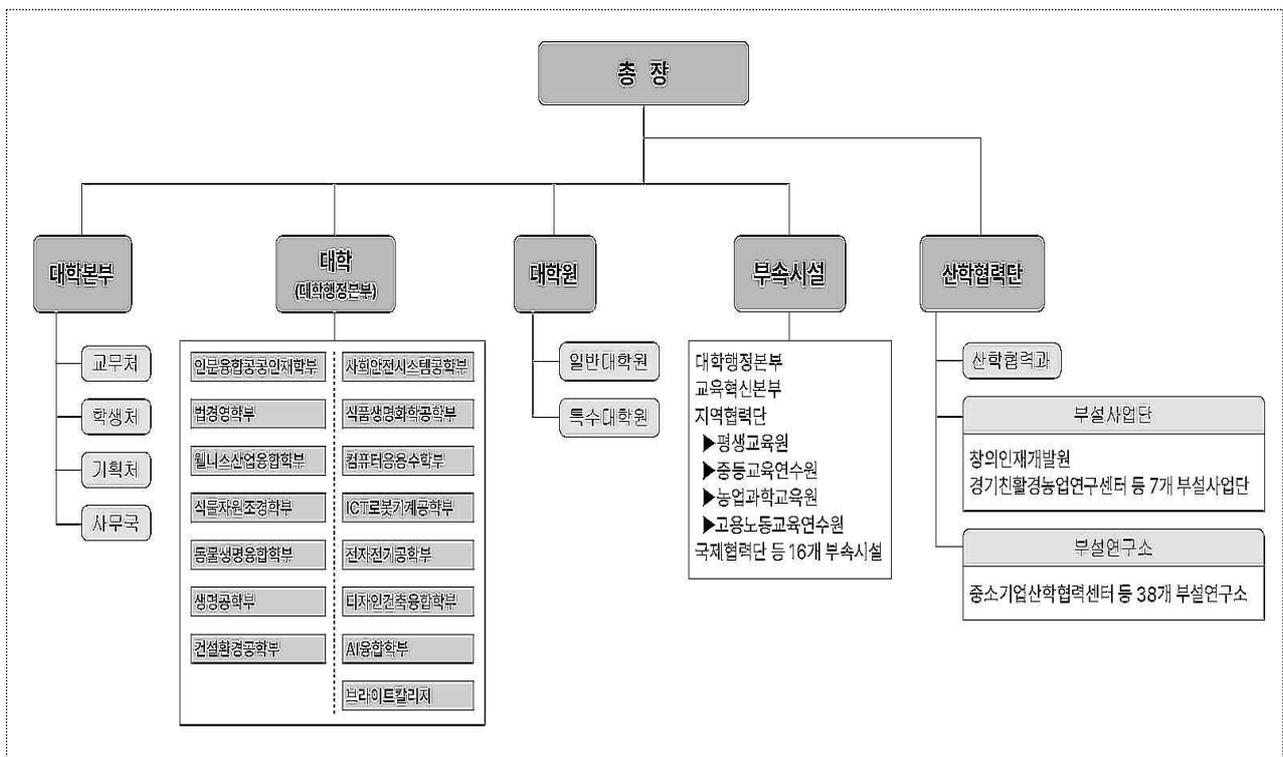
### 가. 연혁

한경국립대학교는 1939년 안성공립농업학교(경기도 안성시 소재)로 개교하여 2012년에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면서 한경대학교가 설립되었고, 이후 2023. 3. 1. 한국복지대학교(경기도 평택시 소재)와 통합하여 한경국립대학교로 출범하였다.

### 나. 조직 및 인원 현황

한경국립대학교는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그림 2]와 같이 총장 1명을 포함하여 3처, 1국, 1단, 7과, 2행정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임교원 등 교원은 307명, 직원은 300명이다. 대학은 13개 학과로 입학정원은 1,271명이고 재적생 수는 6,787명이며, 대학원은 38개 학과로 입학정원은 169명이고 재적생 수는 361명이다.

[그림 2] 한경국립대학교 조직 현황



자료: 한경국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 Ⅲ.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1]과 같이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1] 감사결과 총괄표

(단위: 건)

구분	합계	징계·문책	시정	주의	통보	고발
건수	2	-	-	1	1	-

이번 감사는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추진’과 ‘한경국립대학교의 비위 의혹’을 중점으로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교육부 직원의 저작자 제한요건(평가원의 검정 신청 안내 자료)은 검정심사 기본계획(교육부)이나 검정 실시 공고(평가원)에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개개**(출판업체)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교육부 직원이 참여한 것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곤란
  - 다만, 평가원이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요건을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
- 주식회사 **개개**가 2007년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으로 제작한 것은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나) 한경국립대학교의 비위 의혹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한경국립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시 피해근로자에 대해 의견 청취 없이 전보 인사조치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나, 해당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평택지청)가 2025년 1월 주의 촉구 조치를 하여 동일 사유로 주의요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 평가원장에게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요건을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

고, 교육부장관에게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걱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 2.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가. 국회 감사요구 내용

국회(교육위원회)는 ㉠ A가 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따라 저작자가 될 수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이하 “㉡”라 한다)의 역사교과서 저작자로 참여하였고, 평가원은 합격 공고 전에 저작자 요건 위반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교과서를 최종 검정 합격시켰으며(요구사항 ①), 교육부 소속 집필진, 표지 같이, 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편집자 등 ㉡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와 평가원의 검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구사항 ②)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 나. 감사결과

#### 1) 교육부 직원의 검정 역사교과서 저작자 참여 관련

평가원이 2023. 10. 26. 발행자(출판업체)를 대상으로 검정 신청 접수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배포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이하 “설명회 자료집”이라 한다)에는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기본계획”(2023. 1. 16., 이하 “검정심사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평가원의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2023. 1. 27. 이하 “검정 실시 공고”라 한다)에 없는 저작자 제한요건인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추가 기재되어 있다.

###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의 저작자 요건

-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교과용도서 심의회 위원 임기 중이 아닌 자
- 2인 이상이 공동 저작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 저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함
- 연계판정 대상 도서의 경우 그 저작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자료: 교육부 및 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5. 2. 6.~2. 21.) 중 설명회 자료집에 해당 저작자 제한요건이 기재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평가원은 2011. 8. 26. 최초 검정 실시 공고<sup>7)</sup> 시 교육부의 당시 검정심사 기본계획(2011년 8월)과 다르게 검정 실시 공고의 저작자 요건에 평가원 직원의 저작자 제한 내부 규정[「교과용도서검정관리 규정」(평가원 규정, 2010. 5. 7. 제정) 제32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을 반영하면서 교육부 직원까지도 포함하여 저작자 제한요건을 기재(‘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sup>8)</sup>하였고, 당시 설명회 자료집에도 해당 제한요건을 그대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평가원은 2016. 3. 22. 교육부로부터 역사 교과용도서에 대한 검정 관련 업무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데, 교육부가 2017. 1. 24. 송부한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예비 공고 지침에 맞춰 2017년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를 시행(2017. 2. 27.)하면서부터는 검정 실시 공고에 교육부 등 직원의 저작자 제한요건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설명회 자료집에만 2011년도 최초 검정 실시 공고의 저작자 제한요건을 그대로 관행적으로 반영해 오며 따라 [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설명회 자료집에는 검정 실시 공고와 다르게 해당 제한요건이 잘못 기재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7) 평가원은 1998. 2. 24. 교육부로부터 검정심사 업무를 최초로 법정 위탁받았고, 2008. 12.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검정 실시 공고 등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았음

8) 평가원이 저작자 제한요건 추가 기재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공문 등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것은 없음

[표 2] 평가원의 검정 실시 공고 관련 주요 경과

구분	공고명	공고일	교육부 등 직원의 저작자 제한요건 기재 여부	
			공고	설명회 자료집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	2011. 8. 26.	기재	기재 (2012. 2. 29., 2012. 11. 22., 2013. 11. 21.)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	2015. 11. 30.	기재	기재 (2016. 10. 13., 2017. 9. 29., 2018. 10. 10.)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	2017. 2. 27. <sup>주)</sup>	미기재	설명회 미실시
		2018. 7. 31.	미기재	기재 (2019. 2. 12.)
초등 사회과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	2019. 11. 29.	미기재	기재 (2020. 10. 15., 2021. 9. 8.)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	2023. 1. 27.	미기재	기재 (2023. 10. 26.)

주: 교육부의 역사과 교과용도서에 대한 국·검정 혼용폐지 및 검정 전환 발표(2017. 5. 31.)에 따라 평가원은 2017. 7. 21. 해당 검정 실시 공고(2017. 2. 27.) 취소 후 2018. 7. 31. 검정 실시 공고  
 자료: 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설명회 자료집에만 추가 기재된 저작자 제한요건은 검정심사 기본계획이나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요건이라는 점<sup>9)</sup>,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검정 실시 공고(2023. 1. 27.)와 설명회 자료집(2023. 10. 27.)에는 교육부 직원의 저작자 제한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검정신청일 당시 교육부 직원이었던 A의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가 저작자 제한요건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역사 등 교과용도서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원이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요건을 설명회 자료집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설명회 자료집은 발행자(출판업체)의 검정신청 이해도 제고를 위한 도움자료일 뿐 특정 규정에 따라 생산된 행정적 문건으로 보기 어렵고, 검정 실시 공고(2023년 1월) 즉시 교과서 개발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교과서 제작이 마무리되는 검정신청일 2개월 전(2023년 10월) 공고에 없는 교육부 직원의 저작자 제한요건 추가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 제시

## 가)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저작자 제한요건 기재 부적정

### (1) 업무 개요

평가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9조 등에 따른 역사 등 교과용도서의 검정 실시 공고, 검정 심사,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부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평가원의 검정 실시 공고에 따르면 저작자 요건을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교과용도서 심의회 위원 임기 중이 아닌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교육부 직원에 대한 저작자 제한요건은 없다.

따라서 평가원은 교육부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평가원의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요건을 설명회 자료집에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원이 2023. 10. 26. 발행자(출판업체)에 배포한 설명회 자료집에는 검정 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요건인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심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가 추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A는 2023. 11. 7. ㉠로 임용되어 2024. 11. 6.까지 교육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교육부 직원 임용 전에 ㉠㉠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 한국사2) 저작자로 참여(2023. 7. 26. 원고 제출)했던 사실이 있다.

㉠㉠는 2023. 12. 13. 평가원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신청 시 저작자(총 7명) 중 A의 근무처를 집필 당시 소속인 ‘㉠㉠’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후 A가

검정 신청일 당시 실제 소속이 교육부임을 확인하고 2024. 8. 20. A를 저작자에서 제외 요청하는 공문을 평가원에 송부하였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검정 실시 공고상의 저작자 요건 위반이 아니라는 점, 검정 심사 과정에서 저작자 명단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A가 집필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4. 8. 21. [가]의 저작자 제외 요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교육부에 해당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으며, 2024. 8. 30. [가]의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하여 검정 신청 9개 출판업체 모두에 대하여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을 공고하였다.

이처럼 평가원은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저작자 제한 요건을 설명회 자료집에 기재함으로써 발행자가 저작자 제외요청을 하는 등 검정 과정의 혼선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평가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24년 설명회 자료집(2024. 11. 12.)의 저작자 제한요건을 검정 실시 공고와 일치시켰고, 앞으로도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와 설명회 자료집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앞으로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에 교육부의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에 없는 제한요건을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2) [가]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와 평가원의 검정 과정 관련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교육부 소속 집필진, 표지 같이, 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편집자 등 [가]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과정 의혹에 대해 점검한 결과, 교육부 소속 집필진의 경우 “1)항”과 같이 저작자 제한요건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웠고, [가]의 편집인력 C는 [가]대학교 [가]대학원 석사과정 [가]학과 역사교육전공자로서 [가]에 2023. 4. 24.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어<sup>10)</sup>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의 편집인력 기준(검정출원 교과 관련 전공자로서 소속 편집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표지 같이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가]가 검정신청 시 2007년 역사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으로 제작하고 이를 출판실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는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의 출판실적 기준(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 미충족

#### (1) 업무 개요

평가원은 검정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2023. 1. 27. 검정 실시 공고(평가원 공고 제2023-6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과용도서 검정 과정에서 [가]가 역사교과 출판실적으로 제출한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국립중앙도서관 발급, 이하 “납본증명서”라 한다)로 검정 신청 자격요건인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교과용도서 심사(기초 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2024. 8. 30. 교과용도서 검정

1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 직원의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보수총액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합격 결정 공고를 하였다.

##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의 '검정 신청 자격'에 따르면 역사 등<sup>11)</sup>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출판실적 기준(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과 편집인력 기준(검정출원 교과 관련 전공자로서 소속 편집인력 1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고, 발행자로 하여금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도서 발행 실적 또는 도서 납본 실적 증명서<sup>12)</sup>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원은 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충족한 발행자의 교과용도서 심사본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검정 합격을 결정·공고하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검정 실시 공고 “9. 유의사항”에서 검정 합격 도서의 발행자 등의 교과서 선정·채택에 관련된 불법·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도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발행 정지,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검정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의 목적은 '새로운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자격요건 중 출판실적 기준에 출판 시기(최근 3년)와 교과목(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1책 이상)에 대한 기준을 2008년부터 2025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속

11)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12) 한국교과서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발행한 발행 실적증명서

적<sup>13)</sup>으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교육과정 개정<sup>14)</sup>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제작·발행할 민간 발행자가 최근에 검정출원 과목 관련 도서를 출판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제작·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sup>15)</sup>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출판은 출판사가 도서를 발행하기 전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sup>16)</sup>을 신청·발급<sup>17)</sup>받은 후, 도서를 제작하여 서점 등에 판매·유통하는 과정을 거친다.<sup>18)</sup>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물을 발행한 개인 또는 기관이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납본제도를 운용<sup>19)</sup>하고 있는데, 「도서관법」 제21조 등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도서 등)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도서관자료를 제출(납본)하도록

- 
- 13) 교육부가 평가원에 위탁하여 교과용도서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1998년에는 발행자 자격을 교과와 관계 없이 '최근 2년간 20종 이상 도서 발행'으로 정하였다가, 2008년 검정출원 자격 강화를 위해 발행자 자격요건을 교과목별 기준으로 변경('지난 3년간 검정출원 과목 관련 도서 2책 이상' 출판실적 기준 및 '과목 관련 편집인력 2인 이상' 편집인력 기준)하였고, 이후 2010년부터 2025년 2월 현재까지 현행 발행자 자격 기준('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실적 기준 및 '검정출원 교과 관련 전공자로서 소속 편집인력 1명 이상' 편집인력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출판실적 기준의 경우 출판실적 기준에 출판 시기(최근 2년 또는 3년)와 교과목(교과 관련 도서 2책 또는 1책 이상)에 대한 기준을 꾸준히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도서제작 능력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 발행자가 최근 교과목 관련 출판 경험을 토대로 교과용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14)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2008년 이후 기준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12. 23. 등), 2015 개정 교육과정(2015. 9. 23. 등), 2022 개정 교육과정(2022. 12. 22., 2024. 8. 16.)에 따라 교과서가 개발되었음
- 15)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기록
- 16)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
- 17)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르면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함
- 18) "출판의 기초, 하나·둘·셋"(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9)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널리 활용하게 함과 동시에 후대에 전승하기 위함

되어 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단지 발행 또는 제작된 도서 등의 도서관 제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해당 도서관자료를 출판(판매·유통행위 포함)하지 않고 제작만 하더라도 납본증명서가 발급되므로 해당 도서가 실제로 출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발행자가 검정 신청 시 표지 같이 등을 통해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실적 확인 등을 통해 출판실적을 엄정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행자가 납본증명서 제도를 악용하여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는 2023. 12. 1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1, 한국사2) 검정 신청 시 검정 신청 자격요건인 발행자 요건 중 출판실적 기준에 대한 증빙으로 “⊖” 문제집(이하 “2023년 문제집”이라 한다)에 대한 납본증명서(2023. 8. 25. 발급)<sup>20)</sup>를 평가원에 제출하였고, 평가원은 ☐☐가 제출한 납본증명서를 토대로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서에 대한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거쳐 2024. 8. 30.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를 하였다.<sup>21)</sup>

한편, 언론<sup>22)</sup>에서 2024. 8. 30. 위 2023년 문제집이 ☐☐가 2007년 출판한 “⊖”(이하 “2007년 문제집”이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20) ☐☐는 2023. 7. 12. 국립중앙도서관에 2023년 문제집의 ISBN을 신청하여 2023. 7. 13. 이를 부여받았고 발행일자가 2023. 7. 20.인 2023년 문제집을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제출하여 2023. 8. 25.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았음

2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합격한 9개 출판업체 중 ☐☐를 제외한 8개 출판업체는 모두 한국교과서협회에서 발행한 역사 과목 교과서(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발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음

22)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 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뉴스타파, 2024. 8. 30.)

후 2024. 10. 8.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가] 대표이사 B는 2023년 문제집은 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2007년 문제집의 데이터 복원·정상조판 여부 확인을 위해서 2007년 문제집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바꿔서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 중 [가가]가 2023년 문제집을 제작한 것이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상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3년 문제집의 내용, 문제집의 실제 판매·유통 여부 및 납본증명서의 성격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가가]의 2023년 문제집은 [별표] “[가가]의 2007년과 2023년 문제집 비교”와 같이 각각의 문제 상·하단에 정답(해설의 일부)을 표기하는 등 위치를 조정한 것 외에는 2007년 문제집의 문제와 해설의 내용 및 쪽수가 같고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을 제작함으로써 발행일자가 2023. 7. 20.로 표기되어 있을 뿐 2006년까지의 기출문제만 반영되어 있었다.

더욱이 [가가]는 2023년 문제집을 10~20부 제작하여 납본증명서를 발급받고 자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 제출(납본)하고 일부는 편집, 디자인, 교정자 등 관계자에게 나눠줬을 뿐 판매·유통하지 않았으므로,<sup>23)</sup> 해당 문제집을 서점 등에 판매·유통하지 않고 단지 제작한 것만으로는 출판이라 볼 수 없고, 납본증명서는 발행 또는 제작된 도서를 도서관에 제출한 사실만 증명할 뿐 출판실적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sup>24)</sup>을 고려하면 [가가]가 교과용도서 검정 과정에서 출판실적 기

23) [가가] 대표이사 B가 감사원 서면조사 및 2024. 10. 8.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24) 국립중앙도서관은 2025. 2. 4. 납본증명서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 납본이 완료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증명 기능이 없으며 교재의 내용이 과거 해당 출판사가 출간한 교재와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이 책을 실질적으로 출판(유통)하였다는 실적을 증명하지 않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은 도서 유통을 위한 제도로 출판사는 도서 발행 전 ISBN을 발급받는데 이를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은 실제로는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음에도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신청자의 자격’ 중 출판실적 기준(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위반하였고 이는 검정합격취소 등 사유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의 표지 같이 문제와 관련하여 출판실적 기준은 발행사의 최근 출판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책 실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석하면서, ㉠㉠가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을 제작하였더라도 검정 실시 공고에 따라 발급받은 납본증명서를 평가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개발에 더 엄중한 행정적 절차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현재 검정기관(평가원 등)이 제도개선 중인 사항(납본 도서의 교과 관련성 확인 필요시 실물 제출 안내, 신청 서류의 증명자료 체크리스트 제시, 위원회를 통한 신청 서류의 적합 여부 판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도, 출판

---

있으며 ISBN 부여 여부가 납본의 필수조건도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

실적 기준은 최근 3년간 교과 관련 도서 1책 이상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출판 과정’이 수반되는 납본증명서를 검정 실시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검정 합격 취소 사유,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상의 검정신청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의견대로 출판실적 기준이 단순히 발행자의 도서제작 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출판 시기나 교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도서의 제작 실적만 확인하면 될 것인데<sup>25)</sup> 교육부는 2008년 발행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기준을 신설한 이후 출판사의 교과서 출원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출판실적 기준을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2책 이상’에서 ‘1책 이상’으로 변경하면서도 출판 시기(최근 3년)와 교과목(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판실적 기준의 취지는 발행자가 검정출원 과목 도서를 최근에 출판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제작·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제작 능력만 보기 위해 위와 같은 출판실적 기준을 둔다는 취지의 교육부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도서관법」의 납본은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완료되어 도서를 출판(판매·유통행위 포함)하지 않고 제작만 했어도 납본증명서가 발급되는 바 납본증명서가 ‘도서 출판 과정’이 수반된다는 교육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25) ㉠㉠는 현재 인정교과서(중학교 ‘한문’ 및 ‘정보’, 고등학교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를 발행하고 있음

어렵다.

마지막으로, ㉠㉠은 납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2007년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하여 2023년 문제집을 소수만 제작하였고 이를 관련자에게 나누어줬을 뿐 판매·유통 등 배포행위가 없어 실제 출판이라 볼 수 없다는 점, 실제 출판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는 납본증명서 제도를 악용한 점, 2023년 문제집은 2007년 문제집과 문제와 해설의 내용 및 쪽수가 같고 2006년까지의 기출문제만 수록되어 있는 점, 납본증명서는 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한 사실만을 증명할 뿐 실제 출판 실적을 증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납본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상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을 요구하는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의 출판실적 기준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회사 ㉠㉠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3. 한경국립대학교의 비위 의혹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가. 국회 감사요구 내용

국회(교육위원회)는 한경국립대학교(이하 “한경대학교”라 한다)가 대학원 조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징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조교의 학습권과 근무환경을 침해하였고, ㉠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교직원을 부당 해고하였으며, 한경대학교 총장의 경우 ‘㉡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에서 여학생을 접대에 동원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요구사항 ③)

#### 나. 감사결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한경대학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결정을 부당하게 하였거나, 조교의 학습권과 근무환경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경대학교 총장과 관련한 비위 의혹은 16년 전에 발생한 2009년 사안으로 당시 피해 학생의 신원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등 조사상 한계가 있어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한경대학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없이 전보 인사조치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나, 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교육위원회)의 감사요구일(2024. 11. 29.) 이후인 2025. 1. 24.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주

의 촉구 조치를 받은 것을 고려하여 별도로 주의요구하지 않았다.

##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및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관련

###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경대학교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 2024. 5. 27. [대]대학원 조교 D(대학원 [관]실 겸임근무)<sup>26)</sup>가 대학원 [관]실 팀장 E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한경국립대학교 행정감사 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교무과(교원인사팀)<sup>27)</sup>에서 2024. 6. 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위원회[F(위원장: [관]장), G(노무법인 [법]법), H([법]법협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교 D와 팀장 E 등에 대해 [표 3]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세부 내용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조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6) D는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조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라 대학회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고등교육법」 제14조 등에 따라 교수 지원 및 학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회계직

27) 한경대학교는 2024. 3. 19. 대학원 [관]실 팀장 E가 조교 D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충 심사를 청구하자 이에 대해 총무과(총무감사팀)에서 조사하여 고충심사위원회(대학 내 설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나, 이후 조교 D가 팀장 E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자 총무과(총무감사팀)에서 또다시 D와 E를 조사할 경우 조사 편향의 우려가 있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무과(교원인사팀)에서 조사하겠다고 2024. 6. 24. 총장의 결재를 받음

에 따른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표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다른 직원과 차별	■ 다른 직원과 차별(구두 대화 금지, 메일로 의사 전달 등)
위법·부당한 지시	■ ① 근로계약서,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 지시 ② 대체 휴무, 연가, 병가 사용 제한
집단 따돌림, 모욕 등	■ ① 집단 따돌림(협담, 행사 배제 등) ② 허위 고충민원 신고
지속적인 업무 방해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문서 반려 ② 근무지 이동 지시, 업무처리 방해

자료: 한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한경대학교는 조치계획에 따라 2024. 6. 25. 조사위원회에서 조교 D(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와 팀장 E(이하 “행위자”라 한다) 및 참고인 등<sup>28)</sup>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 [표 4]와 같이 다른 직원과 차별에 대해 ‘행위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공문으로만 업무 지시를 하고 피해근로자와 장기간 대화를 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지속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행정직과 조교 간 업무이해의 격차에 따른 대학 내 구조적 문제<sup>29)</sup>이므로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어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조사위원 3명 중 2명은 ‘불문’ 의견을, 1명은 ‘경고’ 의견을 제시하자, 행위자에 대해 징계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문 종결하였다.

28) 조사위원회는 2024. 6. 25. 피해근로자, 행위자 및 참고인 교수 I(전 團장), 대학원 團실 소속 직원 J, K 등 5명에 대해 문답 조사를 실시

29) 조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이라고 본 대학 내 구조적 문제는 ‘행정직과 조교 간 업무이해의 격차’로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팀장과 조교들 간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 차이를 의미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일 이전부터 팀장 E와 조교 D는 행정부서에 배치된 조교의 업무영역(조교의 학과 업무 외 행정업무 부담여부 및 지시방식)에 대한 분쟁을 지속한 바 있음

[표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직장 내 괴롭힘	▪ 다른 직원과 차별: 다른 직원과 달리 공문으로만 업무 지시, 장기간 대화를 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지속	○
	▪ 부당한 업무 지시, 대체 휴무, 연가 사용 등의 제한, 집단 따돌림 등	X
행위자 처분	▪ 조사위원 2명은 '불문', 1명은 '경고' 의견 제시	-
기타	▪ 향후 피해근로자를 조교 업무에 적합한 학과 등으로 재배치 필요	-

자료: 한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한경대학교는 2024. 6. 25. 조사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조교 업무에 적합한 학과 등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근거로 피해근로자에게 전보 희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고 [표 5]와 같이 2024. 9. 1. [☞]학부(☞학부 겸임)로 전보 및 겸임 인사발령(이하 “전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sup>30)</sup>

이에 피해근로자는 2024. 9. 3.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sup>31)</sup>에 구제 신청(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264)을 하였으며, 2024. 9. 12.에는 한경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회신<sup>32)</sup>받았음에도 행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2차 진정 신고를 하였다.

30) 팀장 E의 경우 2024. 5. 7.부터 2024. 6. 24. 병가 중이었고, 병가 이후 곧바로 질병 휴직(2024. 7. 2.~2024. 12. 31.)을 하여 조교 D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기에 한경대학교는 E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의 행정적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음

31)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기 위해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2) 한경대학교는 2024. 6. 27.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조사 결과 보고서 첨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2024. 6. 28. 피해근로자에게 “사업장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되어 피해자 분리조치 및 가해자 징계 지시하였음”이라고 사건 처리 결과를 회신하였으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확인한 결과 한경대학교 조사결과보고서에 행위자에 대해 조사위원 2명은 ‘불문’, 1명은 ‘경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한경대학교에서 행위자에 대해 ‘불문 경고’를 하였다고 오인하여 ‘가해자 징계 지시’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따라 한경대학교는 2024.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정서 내용을 문자로 통보받고 2024. 11. 18. 피해근로자를 이전에 근무하였던 대대학원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4. 11. 19.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하므로 전보 인사발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서를 송부받았다. 또한 한경대학교는 2025. 1. 2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위반이므로 ‘주의 촉구’ 조치<sup>33)</sup>를 받았다.

[표 5]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후속조치 현황

일자	주요 내용	기관명
2024. 9. 1.	■ 피해근로자 전보 인사발령	한경대학교
2024. 9. 3.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에 따라 전보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9. 12.	■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 대한 미조치로 2차 진정 신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2024. 11. 18.	■ 피해근로자의 전보 인사발령 취소 차원에서 이전 근무지로 인사발령 (2024. 11. 1.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 판정서 관련 내용 문자 수신)	한경대학교
2024. 11. 19.	■ 전보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 관련 판정서 송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 1. 24.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주의 촉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자료: 한경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한경대학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 2명이 포함된 조사위원회(총 3명)를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조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위원 2명

3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과태료(200만 원) 처분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한경대학교는 국가기관으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주의 촉구’ 조치함

은 불문 의견, 1명은 경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한경대학교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위 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하지 않기로 불문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경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당한 전보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위 위반 사실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의 감사요구일(2024. 11. 29.) 이후인 2025. 1. 2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 주의 촉구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감사원에서 동일한 사유로 주의요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대학원생 학습권 침해 관련

한경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등에 따라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으로 ㉠대학원(㉠, ㉡, ㉢, ㉣, ㉤ 등 5개 학과)을 두고 그중 ㉠학과는 목요일(야간)과 토요일(오전)에, 그 외 ㉡학과 등 4개 학과는 월·화·수요일(야간)에 수업을 하고 있다.

한경대학교는 2024. 9. 1. “1)항 가)”와 같이 목요일에 대체 휴무를 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학과 토요일 수업의 학사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조교 D를 ㉠대학원에서 ㉡학부로, 조교 L을 ㉠실 ㉠팀에서 ㉠대학원으로 전보 인사발령하였다.

그런데 조교 L은 개인 사유로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하여 ㉠학과의 토요일 수업을 지원하지 않자 ㉠학과 재학생 등은 전임 조교가 없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유로 ㉠학과 토요일(오전) 수업에 전임 조교를 배치해달라고 요구(총장에

게 의견서 제출 및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하였으며, 이에 한경대학교는 2024. 9. 30. [사]학과 토요일 수업에 인턴장학생을 배정하였고 이후 2024. 11. 18. D를 이전에 근무했던 [대]대학원으로 다시 인사발령하였다.

이와 같이 한경대학교는 인사발령으로 조교 L을 [대]대학원에 배치한 점, 조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주말 근무 의무가 없는 점, [사]학과 토요일 수업에 인턴장학생을 배정한 점, 이후 조교 D를 이전에 근무하였던 [대]대학원으로 다시 인사발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학과 토요일 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교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하여 대학원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2) [대]대에 대한 표적감사 관련

한경대학교는 2022년 5월 [대]34)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0월 [대]와 [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감사규정 제6조에 따르면 한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감사 사항,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부서, 감사의 범위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총장은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여야 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감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한경대학교는 행정감사규정 제6조 등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감사를 하지 않은 기관 중 직제순에 따라 [대]와 [사]

34) 한경대학교는 「한경국립대학교 학칙」(2022. 1. 25.) 제17조 등에 따라 [대], [대] 등 16개 부속시설을 두고 있으며, [대]는 [대]를, [대]는 [대]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음

를 2022년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22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2022. 4. 25.) 및 “2022년 상반기 자체감사 추진계획”(2022. 5. 11.)을 수립한 뒤 2022. 5. 25.부터 같은 해 5. 27.까지 [가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종합감사 결과 [가나]에서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격 미달인 사람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문제점 등이 드러나자, 환경대학교는 2022. 8. 5. [가나]의 채용·복무 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환경대학교는 2022. 9. 19. [가나], [가사<sup>35)</sup>]를 대상으로 채용·복무 및 회계(인건비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환경대 [가나], [가사] 특정감사 추진계획”(이하 “특정감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이후 환경대학교는 특정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반(외부 4명, 내부 2명)을 구성하여 2022. 10. 4.부터 10. 7.까지 [가나]와 [가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대학교는 [가나]와 [가사]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 [가나]에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채용 절차를 위반하여 자격 미달인 사람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겸직 교직원에게 과제수행경비 등 인건비성 수당 8,456만 원(M 3,553만 원, N 4,903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2022. 11. 9.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사] 산학협력중점교수 M과 계약직 직원 N을 해고하는

35) [가사]는 2022년 2월과 6월 자체 감사규정에 따라 산하 [가사]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가사]장 (O)이 해당 직원이 [가나]와 [가사]에 겸직 중인 사유로 인건비 등의 자료 접근 권한이 제한되자 환경대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환경대학교는 [가나] 및 [가사]의 인건비 등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이를 2022년 특정감사 계획에 반영

등 13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한경대학교가 행정감사규정 제6조 등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감사를 하지 않은 기관 중 직제순에 따라 [가나]에 대해 2022년 연간 및 상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점, 종합감사 결과 계약직 직원 채용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추가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점, 특정감사 결과 자격 미달인 사람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겸직 교·직원에게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추가로 문제점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22년에 [가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하여 표적감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3) [가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한경대학교는 2022년 [가나], [가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가사] 산학협력중점교수 M과 직원 N을 해고 처분하였다.

「한경대학교 [가사] 취업규칙」 제13조, 제67조 및 제71조 등에 따르면 [가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용된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 [가사] 및 대학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한경대학교는 「한경대학교 가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임용 지침」 제2조 등에 따라 M을 가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계약직)로 채용(근로계약 기간: 2018. 3. 19.~2023. 3. 18.)하였고, N을 가의 직원(무기계약직)으로 채용(근로계약 기간: 2014. 7. 7.~2023. 6. 16.)<sup>36)</sup>하였다.

그런데 “2)항”과 같이 특정감사 결과 M과 N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문체점 등이 드러나자 한경대학교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장에게 징계요구(해고)를 하였고, 가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 2. 3. M과 N에 대해 해고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한경대학교는 2023. 2. 9. M과 N으로부터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접수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3. 3. 18. M의 정년(만 65세)이 도래<sup>37)</sup>하여 가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N으로부터 2023. 6. 15.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아 6. 19. N의 사직을 처리하였으며, 이후 2023. 6. 21.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M과 N에 대한 해고처분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한경대학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처분을 내린 점, 결과적으로 M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년(만 65세) 도래에 따라 이루어진 점, N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M과 N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부당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36) 「한경대학교 가 취업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M은 2018. 7. 23.부터 2023. 2. 28.까지, N은 2018. 6. 18.부터 2023. 2. 28.까지 가에 겸직하였음

37) 「한경대학교 겸임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항 및 제40조,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7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정년은 65세로 규정

된다.

#### 4) 환경대학교 총장이 경진대회에서 여학생 접대 동원 강요 관련

P 총장은 1996년 9월 [해]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9년 당시 [해]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개]과<sup>38)</sup>와 [개]태가 공동 주최한 경진대회에 평가단장으로 참여하였다.

경진대회는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매니페스토(공약 실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기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하여 2009. 5. 27.부터 5.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개]리조트에서 개최되었는데, P 총장은 당시 환경대학교 교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평가단장)하였고, 대학생들은 [개] 사무국에서 '대학생 경진대회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P 총장이 경진대회에서 대학생들을 접대에 동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P 총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진대회는 공무원, 기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이고, 대회 프로그램도 경진대회 첫째 날은 개회식, 종합토론회, 지방자치단체장 포럼, 지방의원 회의, 천안시장이 주최한 만찬이 이루어졌고, 둘째 날은 분야별 사례 발표와 문화행사, 시상식으로 이루어져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sup>39)</sup>들이 심사위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게 접대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P 총장이 접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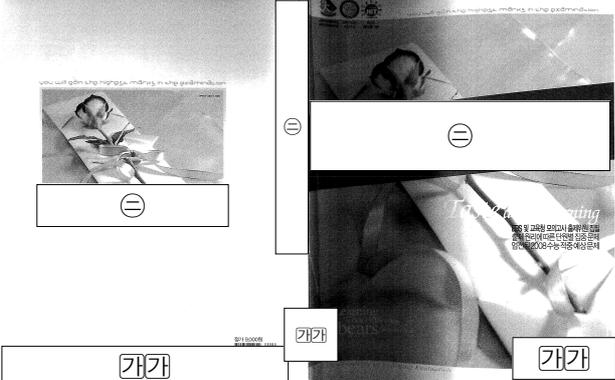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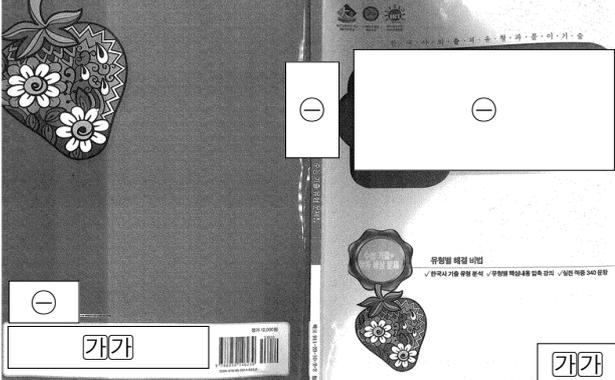
38)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의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약 실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39)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천안시 인근의 환경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행사진행요원은 자원봉사자와 [개] 사무국 직원을 포함하여 30명 규모로 접수 데스크 지원, 시상식 지원, 우수사례 발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계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학생들의 구체적 진술 등이 필요한데, 경진대회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행사로 해당 학생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국회에 제출된 음성파일로도 대상자 특정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며, 16년 전인 2009년에 발생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만한 다른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P 총장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별표]

개개의 2007년과 2023년 문제집 비교

2007년 문제집 표지	2023년 문제집 표지
	
2007년 문제집 내용(문제)	2023년 문제집 내용(문제)
<p><b>081</b> 2006. 6. 평가원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는? [3점]</p> <p>요즘 사람들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륜을 파괴하는 일을 개화라고 한다. 그래서 온 세상이 미친 물결로 가득 찼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본래 개화란 성인(聖人)의 일이다 ..... 준비의 질서와 귀천의 분수가 천지의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개화이다. 어찌 질서 문란과 인륜 파괴를 개화라 하겠는가. 뒷사람을 범하고 귀한 신분을 능멸하는 자는 모두 법을 어지럽히고 막을 어그러뜨리는 백성이니, 지금부터 잘못이 큰 자는 죽이고 작은 자는 징역에 처해 결코 용서하지 말라.</p> <p>-전국 재판소에 보내는 법무 훈령-</p> <p>① 독립 신문을 폐간하였다. ② 태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③ 보안법을 제정·공포하였다. ④ 범죄자의 가족까지 처벌하였다. ⑤ 만민 공동회를 강제 해산하였다.</p>	<p>○ 뒷사람을 범하고 귀한 신분을 능멸하는 자는 자유 민권 운동과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한 독립 협회를 지칭하는 것이다.</p> <p><b>081</b> 2006. 6. 평가원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는? [3점]</p> <p>요즘 사람들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륜을 파괴하는 일을 개화라고 한다. 그래서 온 세상이 미친 물결로 가득 찼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본래 개화란 성인(聖人)의 일이다 ..... 준비의 질서와 귀천의 분수가 천지의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개화이다. 어찌 질서 문란과 인륜 파괴를 개화라 하겠는가. 뒷사람을 범하고 귀한 신분을 능멸하는 자는 모두 법을 어지럽히고 막을 어그러뜨리는 백성이니, 지금부터 잘못이 큰 자는 죽이고 작은 자는 징역에 처해 결코 용서하지 말라.</p> <p>-전국 재판소에 보내는 법무 훈령-</p> <p>① 독립 신문을 폐간하였다. ② 태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③ 보안법을 제정·공포하였다. ④ 범죄자의 가족까지 처벌하였다. ⑤ 만민 공동회를 강제 해산하였다.</p> <p>✓⑤ 만민 공동회를 강제 해산하였다.</p>
2007년 문제집 내용(해설)	2023년 문제집 내용(해설)
<p><b>081</b> 대한 제국의 독립 협회 탄압      정답 ⑤</p> <p>[정답해설] 제시된 자료에 나오는 '준비의 질서와 귀천의 분수'를 파괴하는 자는 자주 민권 운동을 전개한 독립 협회 관련자이다. 중추원 관계가 반포되자 독립 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우려한 보수파와 황실 측근 세력들은 독립 협회가 황제를 폐위시키고 공화국을 건설하여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선출하려 한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고종은 독립 협회의 해산을 명하고 이상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체포하였으며, 헌의 6조에 서명한 대신들을 파면하고 보수적인 조병식 내각을 수립하는 등 독립 협회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는 보부상과 관련된 황국 협회를 통하여 만민 공동회를 습격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p> <p>[오답피하기] ① 독립 신문은 독립 협회 해산 이후에도 운영되다가 경영 악화로 폐간되었다. ② 태형령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총독부에서 발표한 법령이다. ③ 보안법은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④ 1894년 갑오개혁 때 범죄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는 폐지되었다.</p>	<p><b>081</b> 대한 제국의 독립 협회 탄압      정답 ⑤</p> <p>[정답해설] 제시된 자료에 나오는 '준비의 질서와 귀천의 분수'를 파괴하는 자는 자주 민권 운동을 전개한 독립 협회 관련자이다. 중추원 관계가 반포되자 독립 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우려한 보수파와 황실 측근 세력들은 독립 협회가 황제를 폐위시키고 공화국을 건설하여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선출하려 한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고종은 독립 협회의 해산을 명하고 이상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체포하였으며, 헌의 6조에 서명한 대신들을 파면하고 보수적인 조병식 내각을 수립하는 등 독립 협회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는 보부상과 관련된 황국 협회를 통하여 만민 공동회를 습격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p> <p>[오답피하기] ① 독립 신문은 독립 협회 해산 이후에도 운영되다가 경영 악화로 폐간되었다. ② 태형령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총독부에서 발표한 법령이다. ③ 보안법은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④ 1894년 갑오개혁 때 범죄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는 폐지되었다.</p>

주: 81번 문항에 대해서만 예시를 든 것으로, 2007년과 2023년 문제집의 모든 문제와 해설 내용, 그리고 각각의 쪽수가 같음. 그리고 2023년 문제집에는 문항마다 정답(해설의 일부 내용)을 표시함

자료: 개개의 2007년 및 2023년 문제집 재구성